

##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(안)

### 1. 主要 法的根據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(총 정원의 책정)

- 제1항 :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"총정원"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 관리 기관별로 책정한다.
- 제2항 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정원 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2.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

- . 본 개정조례안은 장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·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관리 기능강화와 재난 관리부서의 안전지도 점검 기능 강화 및 신규 확충할 공공시설(종합운동장)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의 의거 정원이 내무자치 12200-321('96. 4. 29)호 내무자치 12200-323('96. 4. 30)호와 경기도 자치 12200-1688호 1689호 및 경기도 자치 12200-1854호로 승인됨에 따라 시본청의 정원 325명에서 333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